

구성원 참여·소통 규정

□ 제정 : 2017. 12. 28.

□ 개정 : 2019. 0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참여 및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구성원은 본 대학교 총장,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절차) 본 대학교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본 대학교는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구성원에게 안내한다.

1.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방향
2. 대학 특성화 전략
3. 대학 조직 및 운영
4. 행정부서 주요 정책, 주요 사업성과

②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대학 구성원의 불편사항이나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본 대학교에 제안할 안건이 있으면 [붙임 1]의 방법을 통하여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구성원이 제시한 의견 및 제안은 [붙임 2]의 절차와 같이 소통 방법의 주관 부서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, 중대한 사항은 대학소통위원회에 상정하여, 대학소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부서(들)에서 처리한 후 해당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.

④ 학과(전공) 신설, 통합, 명칭 변경, 폐지, 정원조정 및 교원의 소속변경 등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은 본 대학교 해당 부서, 관련 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본 대학교 학과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.

제4조(소통위원회) 구성원 참여·소통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계획 수립 및 기타 참여·소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소통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4-2-40 구성원 참여·소통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 1. 구성원별 소통방법과 담당부서 (본문 제3조 제2항)

구 분	소통방법	담당부서
교원	교수 워크숍, 열린 총장실, 면담, 교수 간담회, 제안건의 등	교학처
직원	직원회의, 직원 간담회, 직원 워크숍, 면담, 제안건의 등	총무처
학생	총학생회, 학생대표 간담회, 학생불편 신고함, 열린 총장실, 면담 등	학생지원처

[붙임] 2. 소통절차 (본문 제3조 제3항)



